

##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1
----------	-----

발의년월일 : 2000. 2. 16.  
발의자 : 유영화의원외 3인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99. 8. 31. 법률 제6002호) 및 동법시행령('99. 12. 31. 대통령령 제16,672호)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문구를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회의수당”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개정
- “직무”의 범위를 폐회중인 위원회의 활동시에도 포함시킴.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규정 반영)

###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제53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증 “회기증” 을 “회기증(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증 “회의수당” 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증 “회의수당” 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u>회기중</u>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li> <li>“<u>회의수당</u>”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u>회의수당</u>을 말한다.</li> <li>생 략</li> </ol>	<p>제2조(정의) - - - - -</p> <p>1. - - - - - <u>회기중</u> (자발자치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를 포함한다) - - - - -</p> <p>2. <u>회의수당</u> - - - - - - - - - - <u>회의수당</u> - - - - -</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년도 <u>회의수당</u>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li> <li>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당해년도 <u>회의수당</u>의 1년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li> <li>생 략</li> </ol>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 - - -</p> <p>1. - - - - - - - - - - - - - - - <u>회의수당</u> - - - - -</p> <p>2. - - - - - - - - - - <u>회의수당</u> - - - - -</p> <p>3. (현행과 같음)</p>

# 전 언 통 신 문

1. 일 시 : 2000. 2. 10. 14:30
2. 송 화 자 : 신 회 섭(질의자, 지방행정9급)
3. 수 화 자 : 최 민 수(답변자, 국회의정연수원 부이사관)
4. 내 용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직무”의 개념 정립 건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1호 “직무”의 정의관련)

○ 질 문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제1항중 “직무”의 정의?

○ 답 변 : 본 사안에서 말하는 “직무”란 법 제32조의2에 의거

- ① 회기중 직무뿐만 아니라
- ② 동법 제53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
-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하는 바,

위 직무개념중 ②항 동법 제5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 ⓐ 본회의 의결이나
-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회된 경우에는  
폐회중인 경우라도 위원회의 활동시에는 동법 제32조의  
2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 끝.

13130 ~ 40	
제작기관	명사
제작일자	2000년 2월 10일

전문위원

국장

2000. 2. 10. (수) 14:30

이동호

##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議政活動費. 다만, 議政資料의蒐集·研究를 위한 補助活動의費用은 市·道議會議員에 한한다.

2.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할 때 지급하는 旅費

3. 會期中の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會期手當

②第1項 各號에 規定된 費用의 지급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全文改正 94·3·16)

第32條의2 (傷害·死亡등의 補償) ①地方議會議員이 會期중 職務(第53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開會된 委員會의 職務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한 閉會중의 公務旅行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身體에 傷害를 입거나 死亡한 때와 그 傷害 또는 職務로 인한 疾病으로 死亡한 때에는 補償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補償金의 지급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本條新設 94·3·16)

第33條 (兼職등 금지) ①地方議會議員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改正 89·12·30, 90·12·31, 91·5·23, 94·3·16, 99·2·5>

1. 國會議員, 다른 地方議會의 議員

2. 憲法裁判所裁判官, 各級選舉管理委員會委員, 教育委員會의 教育委員

3. 國家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

4.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放送公社과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任·職員

5. 地方公企業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社과 地方公園의 任·職員

6. 農業協同組合·水產業協同組合·畜產業協同組合·林業協同組合·葉煙草生產協同組合·人夢協同組合(이들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常勤任·職員과 이들組合의 中央會長이나 聯合會長

7. 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教員

### 第6節 委員會

第50條 (委員會의 設置) ①地方議會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委員會는 소관議案과 請願등을 審查·처리하는 常任委員會와 特定한 案件을 一時的으로 審查·처리하기 위한 特別委員會의 2種으로 한다. 이 경우 市·郡 및 自治區議會의 常任委員會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1·12·31>

③委員會의 委員은 本會議에서 選任한다. <改正 91·12·31>

第51條 (委員會의 權限) 委員會는 그 소관에 속하는 議案과 請願등 또는 地方議會가 委任한 特定한 案件을 審查한다.

第52條 (委員會에서의 倚聽等) ①委員會에서는 당해 地方議會議員이 아닌 者는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倚聽할 수 있다.

②委員長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倚聽人の 退場을 命할 수 있다.

第53條 (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會期中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開會한다. 다만, 閉會중에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開會할 수 있다. <改正 91·12·31>

第54條 (委員會에 관한 條例) 委員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 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 第7節 會 議

第55條 (議事定足數) ①地方議會는 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출석으로 開議한다.

②會議中 第1項의 定足數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중지 또는 散會를 宣布한다.

第56條 (議決定足數) ①議事는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②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7條 (會議의 公開) 地方議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議員 3人이상의 發議로 出席議員 3分의 2이상의 賛成이 있거나 議長이 社會의 安寧秩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8條 (議案의 發議) ①地方議會에서 議決할 議案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5分의 1이상 또는 議員 10人이상의 連署로 發議한다. <改正 89·12·30>

##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자치법시행령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낭비의 회의 회의를 포함하여 (회기외의 회의를 포함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환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 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 2 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95.12.30>

[전문개정 95.7.1]

## 제15조의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2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 2 호 또는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 2 호 또는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7.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회의수당의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2조의2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 2 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④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 제1편 의회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1995. 1. 3 ]

개정 1997. 4. 30. 조례 22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  
<개정 1997. 4. 30>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을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97. 4. 3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 4. 30>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